

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5.07.18]
(제정) 2025-07-18 조례 제 7542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총무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2-440-2505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·발전시켜 시민의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각종 기념일”이란 인천광역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높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날을 말한다.

제3조(기념일 등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시장이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기념식 및 기념행사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 <제7542호, 2025.7.18.>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「인천광역시민의 날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「인천광역시민의 날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민의 날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각종 기념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